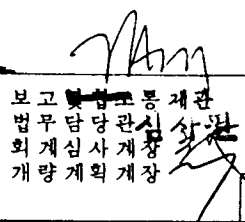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 731-6391/4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개30321-<sup>24</sup>81  
 시행일자 1992.2.17  
 (경유) ( 제 1 안 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주택국장	전결		
주택개량과장			
개량 2 계장			
기안	한 유 석		

제목 도시계획(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)입안 및 주민공람공고

1. 우리시 관내 상원곡동 산1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입안하고,
2. 도시계획법 제16조의2(주민등의 의견청취)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(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)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등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내용 : 공고안 참조(별첨)

나.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회 게재(2종의 일간지에 조간, 석간 또는 1일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)

다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택과

라. 공고예산

- 1) 예산액 : 1,636,800 원
- 2) 산출근거 : ( 3단×8cm×31,000원×2개지 ) × 1.1 = 1,636,800원
- 3) 예산과목 : (주택개발특별회계) 일반재개발, 재개발사업, 사무관리비, 수용비 및 수수료.

4)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방송광고공사 청구에 의거 직불.

첨부 1. 공고안 1부.

2. 도시계획입안도서 1부. 끝.

( 제 2 안 )

수신 공보관

## 제목 신문 게재 의뢰

1.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광고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 제1안 ) 가, 나, 다, 라항 이기시행

첨부 1. 광고안 3부. 끝.

## 주 택 개 량 과 장

( 제 3 안 )

수신 성북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

1. 귀구 관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결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확인인에 도시계획 입안지로 표기 발급할 것이며,

2. 관제서류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바라며, 공고문 사본을 구청 및 등사무소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'92. . . 까지 주민의견서 첨부하여 보고할 것.

첨부 1. 공고문 사본 2부.

2. 도시계획안 도서 각2부. 끝.

## 서 율 특 별 시 장

( 제 4 안 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도시계획(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)입안 및 공람공고 통보

1. 우리시 관내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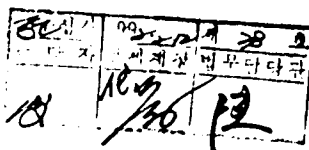
봉보하오니 귀 부서의 의견읍 '92. . .까지 제출하기 바라며, 본 기일내에 제출치  
않습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공고안 1부  
2. 입안도면 1부  
3. 공원개발계획 1부



## 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공원녹지과.

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- 37 호

공 고 (안)

도시계획안 (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)공람공고

- 1. 우리시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코져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<sup>1/2</sup>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 고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2.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992. 2. 17.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기간 : 1992. 2. 18. - 1992. 3. 2. (14일간)

나. 공람내용

○ 도시계획안 (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)

구역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공람및 의견서 제출장소
상월곡동	성북구 상월곡동 산1번지일대	61,539	성북구청 주택과

다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

## 都市計劃立案調書

### 1. 目的

- 再開發區域 新規指定에 對한 住民 要求事項을 再開發事業 次元에서 檢討하여 事業의 活性化 및 民願解消에 萬全을 기하고자 함

### 2. 要求內容

- 城北區 上月谷洞 山1番地 一帶 再開發區域 新規指定
- 現 況

連番	區域名	對象建物(棟)	家口數(家口)			要請者	同意率(%)
			計	家屋主	賃入者		
1	上月谷洞	567	1,372	567	805	住民	93

## 住宅改良再開發區域 決定調書

區分	區域名	位 置	面積(m <sup>2</sup> )	備 考
新規	上月谷洞	城北區 上月谷洞 山1番地 一帶	61,539	

## 上月谷洞 住宅改良再開發區域

### 1. 現 況

#### ○ 土地 및 建物

區 分	土 地 (㎡)			建 物 (棟)		
	計	國.公有地	私有地	計	有許可	無許可
住民要求	61,539	33,646	27,893	567	276	291
檢 討 案	61,539	33,646	27,893	567	276	291

○ 都市計劃現況 : 一般住居地域, 駐車場 整備地區, 公園(月谷第1近隣公園)

### 2. 都市計劃 立案內容

#### ○ 區域 新規指定

區 分	面 積 (㎡)	備 考
住民要求	61,539	同意率 建築物 所有者 93.6% (531/567) 土地 所有者 80.5% (176/220)

○ 都市計劃施設 變更事項 (公園開發計劃 : 別添) (單位 : 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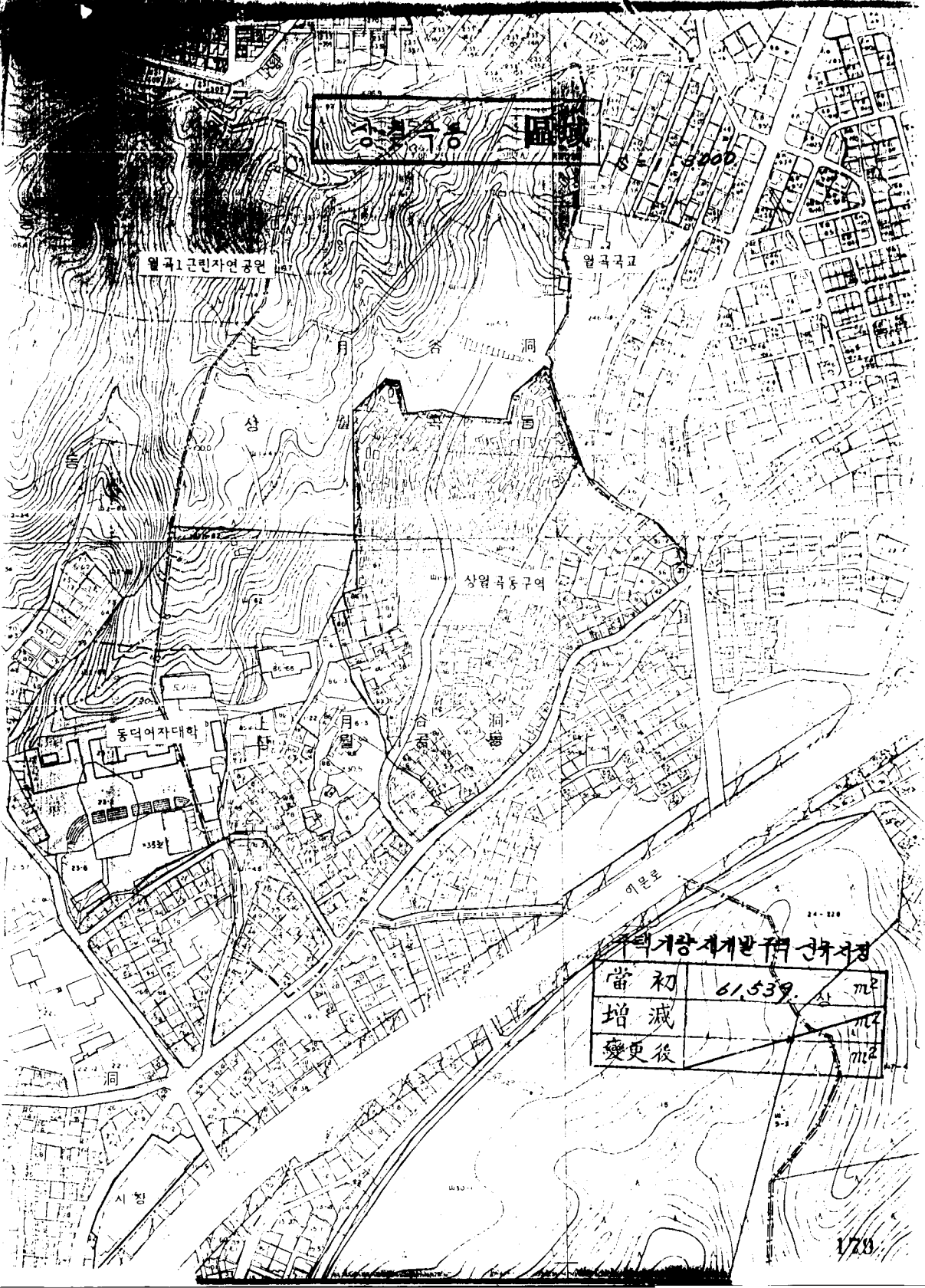
區 分	既 定	變 更	變 更 後	備 考
月谷第1 近隣公園	1,461,300	(減)15,234	1,446,066	區域內公園面積20,374中 - 15,234 解除 - 5,145 公園機能回復豫定

### 3. 都市計劃決定事由

○ 住民要求案 : 當初 同區域中 月谷 第1 近隣公園 에 대하여 住居環境改善 地區指定코져 都市計劃立案하여 建設部에 地區指定要請하였으나 財務部의 不同議로 地區指定이 되지않고 있음.

· 住居環境이 극히 劣惡한 周邊地域을 包含하여 該當住民들로부터 住宅改良再開發事業을 強力히 원하고 있는 地域임.

○ 檢討意見 : 住民들의 要求案대로 住居環境地區指定立案은 解除하고 住宅改良再開發區域으로 指定코자함.



주력거장지개발전면조사정

當初	61,539	m <sup>2</sup>
增減		m <sup>2</sup>
變更後		m <sup>2</sup>